

보도시점 2024. 6. 28.(금) 조간 배포 2024. 6. 27.(목) 09:00

'2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

- 증선위 의결 총 4건, 총 지급액 1억 1,330만원('24.6월 말)

금융위원회는 '23.9월 발표한 「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」의 후속조치로,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*한 바 있다.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 한도가 증가(20→30억원)하였고, 포상금 기준금액**이 상향되는 등 산정기준이 개선되었다. 한편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었다. 이를 통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업무규정 개정('24.2월 시행)

** 포상금 지급액 = 기준금액 × 기여율

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'24.2월부터 6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4건이 증선위에서 의결되었다. 총 지급액은 1억 1,330만원으로, '24년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(2억원)의 약 57%에 달한다. 지난 10년('14~'23년)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,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,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상반기에만 58.2% 증가했다. 이는 포상금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*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포상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.

* 조사 착수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일부 지급

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.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도를 지속 홍보하는 등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.

※ [참고]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

<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>

☞ 금융위원회 신고·제보

- 인터넷 :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'참여마당 → 불공정거래신고' 메뉴 접속

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

- 인터넷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
'민원·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증권불공정거래신고' 메뉴 접속

☞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

- 인터넷 :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(<http://stockwatch.krx.co.kr>)
- 전 화 : 1577-0088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석란 (02-2100-2600)
		담당자	사무관	김하민 (02-2100-2579)
	금융감독원 시장정보분석팀	책임자	국 장	이승우 (02-3145-5551)
		담당자	팀 장	형남대 (02-3145-5560)

① 신고 기준

-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(위반행위자, 장소, 일시, 방법 등)을 적시하여 신고

② 신분 보호

- 불공정거래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여 신고자 보호

※ '24.2월부터 익명신고 가능(단,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)

③ 지급 대상

- 시세조종, 미공개정보이용, 부정거래 등에 대하여 신고한 자로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*를 제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및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**에게 포상금 지급

* 주가변동, 공시자료,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

** 조사 착수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혐의 적발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포상금 지급

④ 산정 기준

-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*에 기여율(0~100%)을 곱하여 산정

* 1등급(30억원) ~ 10등급(1천5백만원), '24.2월부터 등급 산정 시 부당이익 규모를 반영